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1조 관련)

1.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1호	200만원
나.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2호	200만원
다. 법 제15조제5항·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	500만원
라.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·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4항제1호	100만원
마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4호	200만원
바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5호	200만원
사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6호	200만원
아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	법 제70조제3항제8호	200만원

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		
자. 법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9호	200만원
차.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10호	200만원
카.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	법 제70조제3항제12호	200만원

2.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

가. 일반기준

- 1)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2) 1)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[1)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]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3) 나목1)·7)·9)·10)·11)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세부 위반행위의 구분과 관계없이 각 세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횟수를 산정한다.

나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1)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	법 제70조 제3항제4호	10만원	20만원	40만원	40만원
가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		20만원	40만원	80만원	80만원

나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		30만원	60만원	120만원	120만원
다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200만원
라)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					
2)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 제4항제2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	100만원
3)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경우	법 제70조 제4항제2호의2	10만원	30만원	50만원	50만원
4) 법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한 경우	법 제70조 제1항제1호	200만원	500만원	800만원	1천만원
5)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	법 제70조 제1항제2호	200만원	500만원	800만원	1천만원
6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14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	법 제70조 제3항제1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200만원
7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215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가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1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나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	법 제70조 제3항제11호	10만원 20만원	20만원 40만원	40만원 80만원	40만원 80만원

다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		30만원	60만원	120만원	120만원
라)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200만원
8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 되는 「관세법」 제216조제1항 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 우	법 제70조 제3항제1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200만원
9)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 되는 「관세법」 제216조제2항 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 우	법 제70조 제3항제11호	10만원	20만원	40만원	40만원
가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 한 경우		20만원	40만원	80만원	80만원
나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 한 경우		30만원	60만원	120만원	120만원
다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 한 경우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200만원
라)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					
10)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 제3항제12호				
가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		10만원	20만원	40만원	40만원
나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		20만원	40만원	80만원	80만원
다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출신고를 한 경우		30만원	60만원	120만원	120만원

라) 외국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반출신고를 한 경우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200만원
11)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관세법」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 가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	법 제70조 제4항제3호	1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	1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1.5 배	1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	1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
나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		2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	2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1.5 배	2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	2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
다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		3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	3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	3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	3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

라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		적은 금 액	적은 금 액의 1.5 배	적은 금 액의 2배	적은 금 액의 2배
		4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	4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1.5 배	4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	4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
마)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		5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	5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1.5 배	5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	50 만 원 과 반출 물품 원 가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 액의 2배
12)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 품등을 폐기한 경우	법 제70조 제1항제3호	200만원	500만원	800만원	1천만원
13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국외 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 제4항제4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	100만원